

#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 문화사업조례

344

연변조선족자치주인대상무위원회



D9 27.300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

문화사업조례



和龙市图书馆



DF00000616

연변조선족자치주인대상무위원회편찬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组织部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组织部

# 목 록

## 연변조선족자치주제12기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공고 ..... (1)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문화사업조례 ..... (3)

第 二 卷

第 二 卷 第 一 章 第 一 節

(一) 第 一 章 第 一 節 第 一 條

(二) 第 一 章 第 一 節 第 二 條



#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 고

## 제 2 호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연변조선  
족자치주조선족문화사업조례>를 개정할데 관한 결  
정》은 이미 2005년 1월 15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2  
기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고 2005년 3월  
31일 길림성 제10기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비준되었다. 지금 공포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 4월 29일

民國二十九年秋李松至聖魯  
國學館早堂 後即至即即即  
五 卷

五 卷

（The following text i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due to the image quality. It appears to be a list of entries or a detailed table of contents, possibly including names, dates, and descriptions. The text is arranged in several horizontal lines across the middle of the page.)

（Faint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 possibly a signature or a date.)



##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 문화사업조례

(1989년 3월 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9기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통과. 1989년 7월 23일 길림성 제7기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비준.

1997년 8월 2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0기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3차회의에서 통과된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문화사업조례>를 수정할데 관한 결정》과 1997년 9월 26일 길림성 제8기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3차회의에서 통과된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문화사업조례>를 수정할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비준할데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05년 1월 15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2기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된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문화사업조례>를 개정할데 관한 결정》과 2005년 3월 31일 길림성 제10기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회의에서 비준된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문화사업조례>를 수정할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

## 문화사업조례

### 목 록

- 제1장 총칙
- 제2장 창작 및 연구
- 제3장 보도출판, 라디오방송, 영화,  
텔레비죤
- 제4장 군중문화
- 제5장 도서, 문화박물관, 전시,  
문화시장
- 제6장 인재양성
- 제7장 문화사업 투입 및 보장
- 제8장 장려 및 처벌
- 제9장 부칙



##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 등 해당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이하 자치주라 약칭함)의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조선족문화사업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지도로 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방향과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견지하며 사회효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회효익과 경제효익을 통일시키며 문화생산력을 해방, 발전시키고 자치주 각 민족 인민의 정신문화수요를 만족시키며 량호한 사회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제3조 조선족문화사업은 시종 중국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현대화, 세계, 미래를 지향하고 국내 기타 민족과 국외의 우수한 문화성과를 부단히 섭취하여 자치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한다.



제4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문화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조선족문화사업의 개혁과 혁신을 부단히 추진하며 문화사업의 생기와 활력을 증강하고 조선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며 조선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리하며 조선족문화사업을 번영, 발전시켜 자치주의 물질문명, 정치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복무한다.

제5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문화사업에 대한 투입을 늘이고 조선족문화사업발전의 수요를 보장한다.

제6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공민이 법에 따라 문학예술, 보도출판, 라디오텔레비죤방송, 영화, 공연, 전시 등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제7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 문학예술, 도서간행물, 영화, 텔레비죤, 록음록화 등 면에서의 국내외 교류와 합작을 권장, 지지한다.

## 제2장 창작 및 연구

제8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문학예술일군이

본 민족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널리 채납하며 사회주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조선족특색을 띤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것을 권장한다.

**제9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문예창작을 중시하고 전업 및 과외문예인이 문예창작, 문예평론과 작품번역 등 사업에 종사하는것을 권장한다.

**제10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 가무, 연극, 무용극, 가극, 음악극, 창극, 곡예, 관현악 등 무대예술 및 전통문예를 적극 발전시켜 조선족 공민의 다방면의 문화예술수요를 만족시킨다.

**제11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 력사와 현실생활을 반영한 영화, 텔레비죤프로 창작을 지지하며 자치주 영화, 텔레비죤 사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제12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의 서예, 회화, 판화, 조각, 촬영, 공예미술 등 작품의 창작활동을 지지한다.

**제13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문학예술 연구기구를 건전히 하고 조선족 문화예술, 문예리론 연구를 강화하며 대표성을 띤 조선족 문학예술작품 및 인물에 대한 연구토론활동을 전개하고 조선족악기의



개진, 시작과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제14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문화유산의 수집, 발굴, 정리, 출판 사업을 진행하고 조선족민간전통문화 보편조사사업을 적극 벌리며 조선족민간전통문화서류와 보호명부를 작성하여 대표성이 있거나 중요한 기여를 한 조선족민간문화전승인과 전승단위에 상응한 칭호를 수여한다.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민간전통문화 전승인과 전승단위가 장악한 조선족민간전통문화지식과 기예를 전수하도록 고무, 지지하고 후계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물질조건을 제공한다.

### 제3장 보도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제15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보도출판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조선문 간행물, 도서, 녹음록화제품, 전자출판물 및 네트워크출판물 사업을 부축하며 출판단위들이 국내외 각 민족의 우수한 작품을 번역출판하도록 지지, 권장하고 정기적으로 조선문 우수작품, 우수도서 표창활동을 전개한다.



제16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어 라디오방송국, 텔레비존방송국이 자작프로와 역제프로를 잘 꾸리도록 보장하고 조선어라디오 텔레비존방송피복률을 높인다.

#### 제4장 군중문화

제17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군중문화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문화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한다.

제18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향진문화시설건설을 강화하고 문화, 선전, 체육 등 다종 기능을 갖춘 문화관리소(중심)를 세운다. 향진문화기구의 편제, 인원을 합리하게 정한다.

제19조 예술관, 문화관은 농촌, 사회구역 문화 등 군중성 과외문화예술활동의 조직, 지도사업을 강화하여 각 민족 인민군중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한다.

제20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과외문예창작을 권장하고 정기적으로 각종 조선족과외문예공연을 개최하여 군중의 문화생활을 활기 띠게 한다.

제21조 자치주 각 시(현), 향(진)은 차츰 부동한 규모의 민속오락중심을 세우고 조선족군중이 즐겨보고 듣는 전통민속오락활동을 전개한다.

## 제5장 도서, 문화박물관, 전시, 문화시장

제22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주, 현(시) 공공도서관, 미술관 등 공익성문화시설건설을 강화하고 조선문장서, 자료건설을 권장, 지지하며 조선문도서의 편집원천을 적극 확대하고 조선문도서 비중과 종류를 증가한다.

제23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기업, 사업단위, 향진, 가두가 도서관(실)을 잘 꾸리도록 권장하고 민영기업과 개인이 법에 따라 도서관(실)과 서점을 경영하는 것을 제창한다.

제24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소년아동 도서관과 열람실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조선족소년아동의 열독공간과 도서원천을 확대하며 조선족소년아동도서종류를 증가하고 유익한 독서열람활동을 전개하여 소년아동지력개발과 사상도덕교육을 위해 복무한다.



제25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문물보호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한다. 조선족문물의 수집, 연구사업을 중시하고 근대, 현대 혁명력사유적을 잘 보호하며 중요한 력사적가치와 기념적의의가 있는 혁명력사유적에 대해 표지설명을 세우며 기록서류를 만들고 보호범위와 건설통제지대를 확정하여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전통교양에서의 혁명력사유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제26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특점과 지방특색이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잘 꾸려야 한다.

제27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서예, 미술, 촬영, 민간전통예술 등 작품의 전시활동을 지지한다.

제28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영업성공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선족 우수예술프로의 공연활동을 권장부축하며 국내외 공연시장을 힘써 개척하고 농촌, 사회구역, 소년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권장, 부축한다.

제29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국가와 성의 해당 규정에 좇아 문화시장과 문화활동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시장이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의 요구에



따라 건전히 발전하도록 인도한다.

## 제6장 인재양성

제30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여러가지 형식, 각종 경로로 조선족 문화일군과 예술인재를 힘써 양성한다.

자치주 자치기관은 주내 예술학교를 잘 꾸리도록 지지하여 계획적으로 조선족문화예술의 창작인재, 각본연출인재, 공연인재와 교사를 양성한다.

자치주 자치기관은 조선족문화간부양성중심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조선족 문화사업관리인원을 양성하고 그들의 정치자질, 업무자질과 관리기능을 제고시킨다.

제31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유아, 소학교, 중학교 예술교수인원에 대한 양성과 료번강습을 중시하고 청소년문화예술소양을 부단히 제고시킨다.

제32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주내 문화예술계가 국내외 문화예술계와의 문화예술 및 학술교류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권장한다. 실제수요에 근거하고 국

가의 해당 규정에 좇아 계획적으로 조선족문화사업자를 국내외의 문학예술학교와 문학예술단체에 파견하여 연수, 고찰하게 하고 국내외 전문가, 학자를 초빙하여 자치주에 와 임직 또는 학술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조선족문화사업을 부단히 발전시킨다.

**제33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법률, 법규에 따라 부당한 형식과 규모의 비전업 문학예술학교 또는 학습반을 꾸리도록 제창하며 예술급별평정활동을 규범화한다.

**제34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매년 민족사업발전자금의 일정한 비율을 조선족 문화일군과 전업예술인재 양성에 사용한다.

**제35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우수한 문화예술인재의 양성과 사용에 유리한 량호한 기제를 세우고 문화예술인재의 구성을 최적화하며 인재의 예술창조를 권장지지하고 조선족 문화예술사업발전가운데서의 각종 문예인재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 제7장 문화사업의 투입과 보장

**제36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문화사업에 대한 재



정투입이 경제발전에 따라 매년 증가하되 그 증가폭이 재정수입의 장성폭보다 낮지 않도록 담보한다.

**제37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문화사업건설비를 재정예산에 넣어 문화사업의 건설에 사용한다.

**제38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시범성, 인도성을 띤 중점문화산업대상을 부축하고 발전시킨다. 문화산업용자경로를 넓히고 사회 각 방면의 력량이 문화시설을 경영하거나 문화건설을 돕는것을 고무하여 다경로 투입기제를 형성한다. 금융기구는 발전전망이 밝고 량호한 효익을 볼수 있는 문화산업대상에 신용대부며의 지지를 준다.

**제39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문화사업에 대한 기부를 권장한다. 사회력량이 문화행정주관부문과 인민단체를 통한 아래와 같은 문화사업에 대한 기부는 공익성 기부범위에 넣는다.

(1) 조선족 도서출판, 라지오텔레비존방송, 영화사업에 대한 기부;

(2) 민족예술학교, 공연단체,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소), 군중예술관, 과학기술관, 미술관, 기념관에 대한 기부;



(3) 중점문화보호단위, 혁명력사유적, 민족민간전통예술대상에 대한 기부;

(4) 문화행정관리부문에 소속된 비생산경영성의 사회공익성대상과 문화시설에 대한 기부;

(5) 공익성공연활동과 대형 군중성광장문화행사에 대한 기부.

제40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문화시설건설을 도시농촌건설총체계획에 넣는다. 당지 경제발전수준에 부합된 비경영성문화시설신축에 수요되는 부지는 지방인민정부가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도시건설수요로 문화시설부지를 징용할 경우 반드시 건설한 후에 허물거나 건설함과 동시에 허물되 재건한 문화시설규모가 기존의 규모보다 작지 않도록 담보한다.

제41조 각 현(시) 문화행정주관부문은 본 현(시) 조선족문화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 제8장 장려 및 처벌

제42조 자치주인민정부는 조선족문화사업발전에 서 성적이 뚜렷한 단위와 개인을 장려, 표창한다. 자

치주정부급의 문학예술특별상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평의표창활동을 진행하여 우수인재와 우수작품을 장  
려한다.

본 조례를 위반한 단위와 개인은 해당 법률, 법  
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평교육하고 처벌을 준다.

## 제9장 부칙

제43조 자치주민정부는 본조례에 근거하여 실  
시세칙을 제정한다.

제44조 본조례의 해석권은 자치주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제45조 본 조례는 반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2005년 4월인쇄

D92